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3호 2021. 8. 25(수)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20호 남원시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699호 “남원시 운봉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1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25일

남원시 훈령 제 420 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연차유급휴가)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한다.

제80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제목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한다.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직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0조의 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발생 시 조치) 제목으로 하고, 각 항을 신설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하 “피해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공무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공무직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연차유급휴가) ① ~ ② (생 략)</p> <p>③<u>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u></p> <p>④~⑥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41조(연차유급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⑥ 현행과 같음</p> <p><u>제11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u></p> <p><u>제80조의 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u> 2. <u>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u> 3. <u>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u>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u></p> <p>4. <u>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u></p> <p>5. <u>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u></p> <p>6. <u>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u></p> <p>7. <u>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u></p> <p>8. <u>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u></p> <p>9. <u>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u></p> <p>제80조의 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발생 시 조치)① 관리</p>

현행	개정안
	<p><u>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u></p> <p>③ <u>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u>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하 “피해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⑤ <u>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u></p>

현행	개정안
	<p><u>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공무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⑥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공무직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u></p>

[별표 1] <개정 2018. 7. 1. 2018.12.9. 2018.10.15>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계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노년관리	환경관리	물리치료사	의료관리사	통합관리사	영양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전환자		
		소계	행정보정	정사원	정원보조	소계	시설장비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관리								소계	자체원근	의재원근
계	333	151	128	5	18	59	23	25	11	13	85	9	2	3	2	9	0	0	0
본청	소계	206	89	85	4	0	26	9	6	11	13	73	0	2	3	0	0	0	0
	기획실	2	2	2		0													
	감사실	0	0			0													
	시민소통실	2	1	1		0				1									
	행정지원과	10	8	5	3	2		2											
	홍보전산과	4	1	1		3	2	1											
	민원과	7	7	7		0													
	문화예술과	16	14	13	1	2	2												
	관광과	5	4	4		1	1												
	교육체육과	10	9	9		0					1								
	주민복지과	7	2	2		0							2	3					
	노인장애인과	4	2	2		2	2												
	여성가족과	5	5	5		0	0												
	재정과	9	9	9		0													
	일자리경제과	5	4	4		1			1										
	기업지원과	0	0																
	농정과	2	2	2		0													
	농촌활력과	1	1	1															
	원예산업과	3	1	1		2		2											
	축산과	2	2	2		0													

[별표 1] <개정 2018. 7. 1. 2018. 12. 9. 2019. 10. 15>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계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노무관리원	환경관리원	물리치료사	의료관리사	통합관리사	영양관리사	방견강사	전환자		
		소계	보정보정사	환경	진료보조	소계	시설장비유지관리	현장작업관리	장사, 영장관리	현장단속, 감시								소계	자체원근	의재원근
계	333	151	128	5	18	59	23	25	11	13	85	9	2	3	2	9	0	0	0	
산림복지과	10	7	7			3	2	1												
도시과	3	3	3			0														
건설과	18	1	1			5			5	12										
안전재난과	0	0				0														
환경과	73	1	1			0					72									
교통과	7	3	3			4			4											
건축과	1	0				1			1											
직속기관	소계	54	24	6	0	18	9	1	8	0	0	1	9	0	0	2	9	0	0	0
	보건소	39	18			18	0					1	9			2	9			
	농업기술센터	15	6	6			9	1	8											
사업소	소계	43	9	9	0	0	23	12	11	0	0	11	0	0	0	0	0	0	0	0
	관광시설사업소	26	8	8			10	10				8								
	환경사업소	8	0				5	2	3			3								
	상수도사업소	9	1	1			8		8											
의회사무국	7	6	5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회사무국	소계	23	23	2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운봉읍	1	1	1			0											0		
	주천면	1	1	1			0											0		
	수지면	1	1	1			0											0		
	송동면	1	1	1			0											0		

[별표 1] <개정 2018. 7. 1. 2018. 12. 9. 2018. 10. 15>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계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농림수산식품관리	환경관리	물리치료사	의금관리사	통사관리사	영상검수	방견관리	전환자		
		소계	행정보정	경찰사관	경찰공무원	소계	시정비유지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계	자체직군	의재직군
계	333	151	128	5	18	59	23	25	11	13	85	9	2	3	2	9	0	0	0
읍면동	주생면	1	1	1		0											0		
	금지면	1	1	1		0											0		
	대강면	1	1	1		0											0		
	대산면	1	1	1		0											0		
	사매면	1	1	1		0											0		
	덕과면	1	1	1		0											0		
	보결면	1	1	1		0											0		
	산동면	1	1	1		0											0		
	이백면	1	1	1		0											0		
	인월면	1	1	1		0											0		
	아영면	1	1	1		0											0		
	산내면	1	1	1		0											0		
	동충동	1	1	1		0											0		
	죽향동	1	1	1		0											0		
	노암동	1	1	1		0											0		
	금동	1	1	1		0											0		
	왕정동	1	1	1		0											0		
	향교동	1	1	1		0											0		
도동동	1	1	1		0											0			

[별표 1의2] <2016. 7. 1, 2017. 4. 28>

청원경찰의 정원

	부서별	계	경비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계	27	27	0
본청	소계	18	18	
	행정지원과	4	4	
	민원과	1	1	
	문화예술과	3	3	
	교육체육과	1	1	
	여성가족과	2	2	
	산림복지과	6	6	
	건설과	1	1	
직속기관	소계	1	1	
	보건소	1	1	
사업소	소계	7	7	
	관광시설사업소	2	2	
	환경사업소	2	2	
	상수도사업소	3	3	
	의회사무국	1	1	

남원시 공고 제 2021 - 1699호

“남원시 운봉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남원시 운봉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8. 24.

- 다 음 -

1. 계획개요

- 계 획 명 : 남원시 운봉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 공간범위 :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2번지 일원
- 계획시행자 : 운봉영농전문마을 유한회사 대표 임대영
- 승인기관 : 전라북도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1. 08. 24. ~ 2021. 09. 23.(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남원시 농촌활력과(☎063)620-6362)

3. 설명회 개최 및 장소

- 일 시 : 2021년 09월 03일(11:00~12:00)
- 장 소 : 남원시 이백면 초촌길 75-9

4. 의견제출

- 장 소 : 공람장소와 동일
- 방 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각 공람장소에 비치) 제출
- 의견제출대상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의 주민
- 의견제출범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 시행자와 주민 또는 주민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5. 기 타

- 상기사항은 남원시(<http://www.namwon.go.kr>)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촌활력과(☎063)620-6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